

>>>>

환경관련 9개 법률안 국회 통과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한편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하였다.

수도법을 개정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시설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설개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하고,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

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환경건설업 자물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공익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한강 수계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특정지역 중 특히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개정으로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수도권매립지내 주민편익시설인 공원시설·문화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외에 배출기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설공사 발주시 분담이행방식 발주제도를 폐지하고, 분리발주를 의무화하였으며 무자격자의 수주행위 등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정기국회 통과 법률안 세부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 공포후 1년) (대기정책과, ☎ 2110-6775)

가.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 도입(안 제34조의3 신설)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 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다. 현행 차량 배출가스 개선확인 검사를 받고 이의 개선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안

제41조제1항)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마.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43조 신설)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어 육지·연안 등에 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 공포후 6개월) (수도정책과, ☎ 2110-6875)

가. 수도공사기술자의 배치의무 삭제(현행 제14조 삭제)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계약 관련 감독 및 감리규정과 중복되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삭제함.

나. 급수설비 관리제도의 도입(안 제17조)

(1) 그 동안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함.

(2) 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세척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의 도입(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신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을 주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상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 강화(안 제21조 제3항 신설, 안 동조제5항)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공공시설의 소유자 등은 급수관에 대한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소형 저수조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빗물이용시설의 미운영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65조제3항제1의3호 신설)

-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의무에 대한 이행 확보수단이 없는 실정임
- (2) 빗물이용시설의 운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 공포후 6월)
(토양지하수과, ☎ 2110-6768)

가.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 추가(안 제3조제1호, 안 제3조제3호의2 신설)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해양심층수를 먹는물에 추가 함.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안 제28조제1항)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등 그 밖의 샘물 간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은 종전에 평균판매가격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균판매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샘물은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함.

다.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안 제35조의2 신설)

정수기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

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정수기 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정수기제조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이 경우 정수기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협동조합이 이들을 대신하여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

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추가 (안 제40조제1항제1호)

먹는샘물 이외의 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먹는샘물 이외의 물을 용기에 넣어 제조·수입 또는 판매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을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일 : 공포후 6월) (환경경제과, ☎ 2110 - 6686)

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업무범위에 환경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마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나. 정부가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정부가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 사무소 건립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라. 환경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환경기술로 평가된 기술에 “신규성”의 의미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마. 환경건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도입(안 제19조의4 신설)

(1) 최근 국제무역에서의 환경성 규제강화와 이로 인한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환경건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건설팅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환경건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국내의 환경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행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바. 환경건설팅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19조의5 신설)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건설팅회사에 대하여 환경건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건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 수립주기 마련

정부 주요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시행효과를 기하고자 5년 주기로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 공포후 6월) (자원재활용과, ☎ 2110 - 6953)

가.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

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용어 정의함(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또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기물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치한 집하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도록 하고, 판매업자가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도록 함.

마.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항 신설)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바.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빈용기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빈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방안의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아. 재활용단지 조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 공포후 3월)
 (유역제도과, ☎ 2110-6837)**

한강 수계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시킴(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7.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 공포후 3월)
 (생활공해과, ☎ 2110-6814)**

가. 정부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다.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항제3호의3 신설).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공포후 6월)(생활폐기물과, ☎ 2110-6933)

가. 감사의 임기를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제4항).

나. 공사 직원이 당해 공사 업무에 관한 소송 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인 선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를 수도권매립지내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운영,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 매립관련 기술의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 출연·출자를 할 수해 업무의 위탁이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24조제6항).

9.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공포일)(산업폐기물과, ☎ 2110-6944)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이외 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되, 분담이행방식은 폐지함(안 제15조제1항).

다.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라. 무자격자인 철거공사업자·장비임대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용까지 받는 수수행위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안 제62조).

마.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에 대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6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